

「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심현정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6. 5.
- 회부일자 : 2024. 6. 10.
- 상정일자 : 2024. 6. 10.

### 2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흡하고 징계 등에도 의정비가 지급되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됨.

### 3. 주요내용

- 의정비 지급 제한(안 제3조의2)
  -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, 징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제한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 등의 ‘지급기준’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‘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’을 의결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함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평창군의회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청렴한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군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의2(지급제한) 및 별표3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기준을 (기존) 구금에서 (개정) 징계 및 구금으로 강화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까지 지급 제한하도록 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비위행위로 인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으로,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문의 맞춤법 등도 같이 정비하여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됨.

#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

의안번호 제2022 - 859호

의 안 명 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」

대상기관 행정안전부, 243개 지방의회

의 결 일 2022. 12. 19.

## 주 문

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」을 별지와 같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243개 지방 의회의 장에게 권고한다.

## 이 유

별지와 같다.

## IV. 개선방안

### 1 지방의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

#### □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

- 겸직·영리행위 금지 위반을 포함하여 갑질·성 비위,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'출석정지 90일 이내'로 확대

#### □ 제명과 출석정지 사이에 새로운 징계수단 도입

- 지방의원직에서 원천 배제되는 처분인 제명과 공식 회의 출석이 금지되는 30일 이내 출석정지 간 발생하는 제재 수준 격차 해소  
※ '○개월 이내의 직무정지', '출석정지 일수 확대' 등 다양한 방안 검토

### 2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

#### □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

- 본회의·위원회에 일정 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·사과의 경우도 의정비 감액

구분	의정비 지급 제한(예시)
<b>출석정지</b> ▶ 일반적인 경우	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/2 감액 (⇨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)
▶ 질서유지 의무 위반	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(⇨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)
<b>공개회의 경고·사과</b> ▶ 질서유지 의무 위반	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/2 감액 (⇨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)



### 3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제한

---

#### □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

-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의 공소제기 후 구속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또는 지자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 감액

※ (예시) 의정비(월정수당+의정활동비) 전액 미지급, 월정수당 ○% 이내 지급 등